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1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12.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발의자: 박정환의원 외 7명
- 발의일자: 2021. 11. 25.
- 회부일자: 2021. 12. 3.
- 검토기간: 2021. 12. 3. ~ 12. 9.(7일간)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달서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제정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정의(안 제2조)
- 다. 기본원칙(안 제3조)
- 라. 지원범위(안 제4조)
- 마. 지원제외 등(안 제5조)
- 바. 지원기준 및 절차(안 제6조)
- 사. 지원방법(안 제7조)
- 아. 전문기관의 운영 등(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 개정)」이 전부개정 되어 달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의장으로 독립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서 위임된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를 준수하였고,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 관 련 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 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 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 · 고용비율 및 시설 · 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 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